



제420회 국회 (임시회)
제2차 환경노동위원회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유네스코 국제보호지역 글로벌 연구·훈련센터의
설립 근거 마련 〉

■ 김한규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4847호)

2025. 1.

환 경 노 동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신항진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1. 유네스코 국제보호지역 글로벌 연구·훈련센터의 설립 근거 마련	2
※ 참고자료	9
1. 국제보호지역 현황	9
2. 국제보호지역 글로벌 연구·훈련센터 개요	11
3. 「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유네스코) 후원 국제보호지역 글로벌 연구·훈련센터 설립에 관한 대한민국 정부와 유네스코 간의 협정」 원문	12

I. 제안경위

2024년 10월 23일 김한규의원이 대표발의한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2024년 10월 2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제보호지역(생물권보전지역, 세계자연유산, 유네스코세계지질공원 및 람사르습지)의 관리를 개선하기 위한 연구와 훈련을 위하여 2024년 4월 제주에 유네스코 국제보호지역 글로벌 연구·훈련센터가 민법상 재단법인으로 설립되었으나 이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의 법적 근거가 미비한 실정임.

이에 「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유네스코) 후원 국제보호지역 글로벌 연구·훈련센터 설립에 관한 대한민국 정부와 유네스코 간의 협정」의 이행을 장려하고, 국제보호지역의 보존·관리를 개선하기 위한 연구와 훈련을 조화롭고 통합적인 방식으로 제공하는 국제보호지역 글로벌 연구·훈련센터의 설립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지속가능발전과 환경보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1조의3 신설).

Ⅲ. 검토의견

1. 유네스코 국제보호지역 글로벌 연구·훈련센터의 설립 근거 마련

개정안은 유네스코 국제보호지역 글로벌 연구·훈련센터의 설립, 재정 지원 및 공유재산 사용 특례 등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1조의3 신설).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신설>	제21조의3(유네스코 국제보호지역 글로벌 연구·훈련센터의 설립) ① 「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유네스코) 후원 국제보호지역 글로벌 연구·훈련센터 설립에 관한 대한민국 정부와 유네스코 간의 협정」의 이행을 장려하고, 국제보호지역을 효율적으로 보존·관리하기 위하여 유네스코 국제보호지역 글로벌 연구·훈련센터(이하 “국제보호지역 연구·훈련센터”라 한다)를 설립한다. ② 국제보호지역 연구·훈련센터는 법인으로 한다. ③ 국제보호지역 연구·훈련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국제보호지역의 보존·관리 사례

현행	개정안
	<u>연구 및 지침 개발</u> <u>2. 국제보호지역의 보존·관리에 대한 교육·훈련 사업</u> <u>3. 국제보호지역 보존·관리 정책의 개발에 관한 자문 및 지원</u> <u>4. 국제보호지역의 보존·관리에 관한 홍보</u> <u>5. 국제보호지역의 보존·관리를 위한 국내외 교류·협력 사업</u> <u>6. 그 밖에 국제보호지역의 보존·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u> <u>④ 국제보호지역 연구·훈련센터에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원과 필요한 직원을 둔다.</u> <u>⑤ 국제보호지역 연구·훈련센터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u> <u>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국제보호지역 연구·훈련센터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u> <u>⑦ 지방자치단체는 국제보호지역 연구·훈련센터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수</u>

현행	개정안
	익하게 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제보호지역 연구·훈련센터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 유네스코 국제보호지역 글로벌 연구·훈련센터(이하 이 조에서 “재단법인 국제보호지역 연구·훈련센터”라 한다)가 그 지위의 승계에 관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고 설립등기를 한 경우에는 제21조의3의 개정규정에 따라 설립된 국제보호지역 연구·훈련센터로 본다. 이 경우 재단법인 국제보호지역 연구·훈련센터는 「민법」 중 법인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산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의 경우 재단법인 국제보호지역 연구·훈련센터의 재산과 권리·의무는 국제보호지역 연구·훈련센터의 재산과 권리·의무로 본다. ③ 제1항의 경우 이 법 시행 전

현행	개정안
	에 재단법인 국제보호지역 연구·훈련센터가 행한 행위는 국제보호지역 연구·훈련센터가 행한 행위로, 재단법인 국제보호지역 연구·훈련센터에 대하여 행한 행위는 국제보호지역 연구·훈련센터에 대하여 행한 행위로 본다.

유네스코 국제보호지역 글로벌 연구·훈련센터(GCIDA, 이하 “국제보호지역 글로벌 연구·훈련센터”라 한다)는 2024년 4월에 발효된 「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유네스코) 후원 국제보호지역 글로벌 연구·훈련센터 설립에 관한 대한민국 정부와 유네스코 간의 협정」(이하 “협정”이라 한다)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 재단법인으로,

환경보전이 지속가능발전 목표와 연계되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생물권보전지역, 세계자연유산, 유네스코세계지질공원 및 람사르습지의 관리를 개선하기 위한 연구와 훈련 제공을 그 설립 목적으로 함.

국제보호지역 글로벌 연구·훈련센터는 설립 국가가 센터 운영·재정을 책임지고, 유네스코는 이사회 등 운영기구에 참여하여 기술적으로 지원하는 유네스코 카테고리2 센터에 해당하며,

[유네스코 카테고리2 센터 개요]

○ (명칭) 유네스코 카테고리2 센터 (C2센터) * Institutes and Centers under the auspices of UNESCO: UNESCO Category 2		
구분	유네스코 카테고리 1센터	유네스코 카테고리 2센터
성격	• 유네스코 정규 조직, 유네스코 사업 수행	• 법적으로 유네스코 조직은 아니며, 유네스코-회원국 간의 협정에 근거
운영	• 유네스코 총회에서 운영기구 선출 • 유네스코 규정에 따라 직원 채용·관리	• 유네스코는 운영기구(이사회)에 참여 • 센터 자체 규정에 따라 직원 채용·관리
예산	• 유네스코 사업 및 예산서에 포함	• 협정 당사국 부담, 유네스코 예산에 미포함

○ (역할) 설립 국가가 센터 운영·재정을 책임지고, 유네스코는 운영기구(이사회 등)에 참여하여 기술적 지원

○ (근거) 유네스코(사무총장)와 정부대표 간 협정을 맺어 설립, 6년마다 갱신

※ 출처: 환경부

국제보호지역 글로벌 연구·훈련센터의 운영비용에 대해서는 환경부가 사업비 성격의 예산을 지원하고, 제주특별자치도는 구역 및 장비 유지·관리 성격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음.

[국제보호지역 글로벌 연구·훈련센터 지원예산 편성 현황]

(단위 : 백만원)

세부사업	내역사업	구분		'24년	'25년
생태계보전 국제협력강화(1832-308)	글로벌 국제보호지역 연구·훈련센터 운영	계		1,195	1,215
		국비	320-01 (민간경상보조)	1,125	1,125
		도비	-	70	90

※ 출처: 환경부

국제보호지역 글로벌 연구·훈련센터와 같이 유네스코 협정에 따라 설립되어 정부 지원으로 운영되고 있는 국내 유네스코 카테고리 2 기관에는 국제무예센터(인문사회과학), 아시아·태평양 무형유산 국제정보네트워킹센터(문화), 아시아·태평양 국제이해교육원(교육), 물안보 국제연구교육센터(자연과학) 등이 있으며,

국제보호지역 글로벌 연구·훈련센터를 제외한 모든 기관에 대해서는 설립 및 국고 지원 등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음.

[국내 유네스코 카테고리 2 기관 현황]

구 분	국제무예센터	아시아-태평양 무형문화유산 국제정보 네트워크센터	아시아-태평양 국제이해교육원	물 안보 국제연구교육센터	국제기록유산센터	세계유산 국제해석 설명센터	국제보호지역 글로벌 연구훈련센터
분야	인문사회과학	문화	교육	자연과학	정보커뮤니케이션	문화	자연과학
설립일	2016. 12.	2011. 11.	2000. 8.	2017. 5.	2020. 7.	2022. 1.	2024. 4.
설립 주체	문화체육관광부 충청북도 충주시	국가유산청	교육부	국토교통부 *환경부 이관('18.6.~)	행정안전부	국가유산청	환경부
운영비 부담	국비 및 지방비	국비	국비	국비	국비	국비	국비
근거 법률	「전통무예진흥법」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유네스코 활동에 관한 법률」	「물관리 기본법」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세계유산법」	-
주요 임무	전통무예 교류 활성화 및 학술연구, 교육프로그램 보급 등	아태지역 무형유산 보호활동, 자료발간, 정보교류 및 협력 등	아태지역 국제이해 협력 교육 및 연구 등	개도국의 지속가능한 수자원 관리를 위한 통합 연구, 교육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 등	세계 기록유산관리 및 보존사업 디지털화 연구, 교육 홍보 등	세계유산 해석 과 설명을 통한 상생적 가치 확 산 및 다양성 증 진	국제보호지역의 통합관리 매뉴 얼 개발,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 관 리자 교육 및 훈 련 등
연간 운영비 ('24년)	22억원	30억원	40억원	10.5억원	12억원	26억원	11.2억원

※ 출처: 환경부

이에 개정안은 다른 기관과 마찬가지로 국제보호지역 글로벌 연구·훈련센터의 설립, 법인격 부여 및 임직원에 관한 규정, 국고 지원을 위한 근거 규정 등을 마련하려는 것으로,

국가의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 협정의 내용을 충실하게 이행하고, 국제보호지역 글로벌 연구·훈련센터의 안정적 운영에 기여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것으로 보임¹⁾.

1) 다만, 행정안전부는 국제보호지역 연구·훈련센터의 역할이 주로 국가가 수행해야 하는 사무로 판단되므로, 국제보호지역 연구·훈련센터의 공유재산 무상 사용(안 제21조의3제7항)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문 의 처
02)6788-5541

※ 참고자료

1. 국제보호지역 현황²⁾

구분	명칭	위치	면적(km ²)	지정년도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 (10개소)	설악산 생물권보전지역	강원도 인제, 양양, 속초, 고성	767.49	1982 (2016 확대)
	제주도 생물권보전지역	제주특별자치도 전역	830.94	2002 (2019 확대)
	신안다도해 생물권보전지역	전남 신안군	3,238.74	2009 (2016 확대)
	광릉숲 생물권보전지역	경기 포천시	244.65	2010
	고창 생물권보전지역	전북 고창군	671.52	2013
	순천 생물권보전지역	전남 순천시	938.40	2018
	강원생태평화 생물권보전지역	강원도 고성, 철원, 화천, 양구, 인제	1,828.15	2019
	연천임진강 생물권보전지역	경기 연천군	584.12	2019
	완도 생물권보전지역	전남 완도군	4,038.99	2021
	창녕 생물권보전지역	경남 창녕군	530.51	2024
유네스코 세계 자연유산 (2개소)	제주화산섬과 용암동굴	제주 서귀포시, 제주시	188	2007
	한국의 갯벌	충남 서천군, 전남 신안군, 순천시, 보성군, 전북 고창군	845	2021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5개소)	제주도	제주특별자치도 전체	1,864	2010
	청송	경상북도 청송군	845	2017
	무등산권	광주광역시, 전남 화순, 담양군	1,051	2018
	한탄강	경기도 포천, 연천, 강원도 철원	1,165	2020
	전북서해안권	전라북도 고창군, 부안군 일원	1,892.5	2023
람사르 습지 (26개소)	대암산용늪	강원 인제군	1.36	1997
	우포늪	경남 창녕군	8.652	1998
	신안장도 산지습지	전남 신안군	0.09	2005
	제주 물영아리오름	제주 서귀포시 남원읍	0.309	2006
	무제치늪	울산 울주군	0.184	2007
	두웅습지	충남 태안군	0.067	2007
	제주 물장오리오름	제주 제주시	0.628	2008
	오대산 국립공원 습지	강원 평창군	0.018	2008
	강화 매화마름 군락지	인천 강화군	0.003	2008
	제주 1100고지	제주 서귀포시	0.126	2009
	제주 동백동산 습지	제주 제주시	0.590	2011
	고창 운곡습지	전북 고창군	1.797	2011
	한강밤섬	서울 영등포구	0.273	2012
	제주 숨은물뱅디	제주 제주시	1.175	2015

- 2) 환경부에 따르면, 국제보호지역에 대한 법적 정의는 없으며 ‘정부-유네스코 간 국제보호지역 글로벌 연구·훈련센터 설립에 관한 협정문’에서 국제보호지역을 생물권보전지역, 유네스코세계지질공원, 세계자연유산 및 람사르습지로 정의하고 있음.

구분	명칭	위치	면적(km ²)	지정년도
	한반도습지	강원 영월군	1.915	2015
	순천 동천하구	전남 순천시	5.399	2016
	고양 장항습지	경기 고양시	5.956	2021
	문경 돌리네 습지	경북 문경시	0.494	2024
	평두메습지	광주 북구 회암동	0.023	2024
	순천만·보성갯벌	전남 순천시	35.5	2006
	무안갯벌	전남 무안군	35.89	2008
	고창·부안갯벌	전북 부안군	45.5	2010
	증도갯벌	전남 신안군	31.3	2011
	송도갯벌	인천 연수구	6.11	2014
	대부도갯벌	안산 단원구	4.53	2018

※ 출처: 환경부

2. 국제보호지역 글로벌 연구·훈련센터 개요

□ 조직

- (사무국) 총 3개팀(기획, 연구, 훈련) 10명(상근) 조직으로 발족 → 3단계(기반조성-도약-안정화)로 확대 예정
- (이사회) 총 16명 이내 (정부 대표 3인, 센터장 1 유네스코 대표 3인 등)

□ 예산 : 약 11억원 (인건비 등 운영비 7억원, 사업비 4억원)

□ 주요기능

- (연구사업) 국제보호지역 관리 선진화 방안, 지정 효과 분석 등
 - (관리방안) 관리체계 효율화, 보호지역 내 지역주민 갈등관리 및 제도 개선방안, 지역 발전(경제적 효과 및 공평한 배분 등) 방안 연구
 - (효과분석) 생태계서비스 증진 및 기후변화 대응 효과 분석 연구
- (교육훈련) 국제보호지역 지정 신청서 및 보고서 작성, 갈등관리 등
 - (단기) 10일 이내, 일반인·전문가 대상 강연 및 교육 훈련 워크숍
 - (중기) 3개월 이상, 전문가 및 학위 취득자 대상 국제보호지역 관리 자격증 취득 과정 운영

3. 「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유네스코) 후원 국제보호지역 글로벌 연구·훈련센터 설립에 관한 대한민국 정부와 유네스코 간의 협정」 원문

◎조약 제2571호

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유네스코) 후원 국제보호지역 글로벌 연구·훈련센터 설립에 관한 대한민국 정부와 유네스코 간의 협정

대한민국 정부와 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이하 공동으로 "당사자"라 한다)는,
국제보호지역의 연구 및 훈련에 관한 국제협력 증진을 모색하는 유네스코 총회의 결의를 유념하고,

유네스코 사무총장은 총회에 제출된 초안에 합치하게 국제보호지역 글로벌 연구·훈련센터 설립에 관한 협정을 대한민국 정부와 체결하도록 총회의 승인을 받았음을 고려하며,

이 협정에서 앞서 언급된 센터에 부여할 당사자 간 협력 체계를 규율하는 조건을 정하기를 희망하며,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제1조 정의

이 협정에서,

1. "유네스코"란 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를 말한다.
2. "정부"란 대한민국 정부를 말한다.
3. "센터"란 대한민국 제주특별자치도에 위치하는 국제보호지역 글로벌 연구·훈련센터(GCIDA)를 말한다.

제2조 설립

정부는 이 협정에서 규정된 바에 따라, 2023년 중에 유네스코의 후원으로 센터를 제주특별자치도에 설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는 데 동의한다.

제3조 협정의 목적

이 협정의 목적은 당사자 간 협력을 규율하는 조건과 또한 그로부터 발생하는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를 정하는 것이다.

제4조 법적 지위

1. 센터는 유네스코로부터 독립적이다.
2. 정부는 대한민국의 법령에 따라 대한민국 영역에서 센터가 활동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기능적 자율성과 다음을 수행할 법적 능력을 향유하도록 보장한다.

가. 계약의 체결

나. 소의 제기, 그리고

다. 동산과 부동산의 취득 및 처분

제5조 정관

센터의 정관은 다음을 정확하게 기술하는 규정을 포함한다.

- 가. 국가의 법 체계 내에서 센터에 부여된 법적 지위(센터의 기능 수행에 필요한 법적 능력과 자금을 수령하고 제공한 용역에 대한 대가를 획득하며 센터의 기능 수행에 필요한 재

산을 취득하고 처분하는 데 필요한 법적 능력을 포함한다), 그리고

나. 센터의 운영기구에 유네스코의 참여를 허용하는 센터의 운영 구조

제6조 목적과 기능

1. 센터의 주요 목적은 환경보전이 지속가능발전 목표와 연계되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중국제보호지역(MIDA)을 포함한 국제보호지역(IDA), 즉, 생물권보전지역, 세계자연유산, 유네스코세계지질공원 및 람사르습지의 관리를 개선하기 위한 연구와 훈련을 조화롭고 통합적인 방식으로 국제적으로 제공하는 것이다.

2. 센터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가. 2030 지속가능발전 의제와 관련하여 지속가능발전과 환경보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국제보호지역의 관리에 관한 선진 지식의 확산

나. 국제보호지역의 보전·관리와 통합된 지역 발전에 대한 사례 연구 및 사례의 개발을 위한 연구의 수행과 우수 사례에 관한 지침의 개발

다. 개발도상국, 특히 아프리카와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국가를 중심으로 다중국제보호지역을 포함한 국제보호지역의 신청 및 관리를 담당하는 국가 및 지역 당국의 관리자와 대표를 위한 역량개발 사업의 제공

라. 국제보호지역에 관한 신청 문서 및 정기보고서의 작성과 관리 정책의 개발에 관한 자문 및 지원

마. 특정 생태계나 생물군계 내 및/또는 특정 지역이나 소지역 내 네트워크 형성과 협력을 위한 기반의 제공

바. 2030 지속가능발전 의제와 기후변화에 관한 「파리협정」에 기여하도록 국제보호지역의 역량을 증진·강화할 연구 및 훈련을 강화하기 위하여 적절한 국제연합(UN) 기관·사업과 그 밖의 국제 정부 간 기구, 비정부기구 및 글로벌 기금·재단과의 파트너십의 개발

제7조 이사회

1. 센터는 이사회의 지도와 감독을 받고, 이사회는 3년마다 새로 구성되며 다음을 포함한다.

가. 대한민국 환경부 장관 또는 그/그녀의 대리인이 맡는 의장 1명

나. 외교부, 환경부 및 문화재청 등 국제보호지역 관련 정책 및 국제협력을 담당하는 정부의 대표 3명

다. 제주특별자치도의 대표 1명

라. 유네스코 한국위원회의 대표 1명

마. 관련 국제기구 및 학계("학계"란 관련 대학 및 연구 기관을 말한다)의 대표 5명

바. 가능한 범위에서 공평한 지리적 대표성을 보장하면서, 제10조제2항에 따라 센터의 활동에 참여하려는 희망을 센터에 통보한, 센터의 활동에 참여하기를 원하는 유네스코 회원국 및 준회원의 대표 3명 이내

사. 유네스코 사무총장의 대표 1명, 그리고

아. 센터의 장 또는 그/그녀의 대리인 1명(의결권은 갖지 않는다)

2. 이사회는 다음을 수행한다.

가. 센터의 중장기 사업에 대한 승인

나. 직원 구성을 포함한 센터의 연간 업무계획 및 예산에 대한 승인

다. 유네스코의 사업 목표에 대한 센터의 기여에 관한 격년 자체평가보고서를 포함하여, 센터의 장이 제출한 연례 보고서의 검토

라. 센터의 재정보고서에 대한 독립적인 정기 감사보고서의 검토와 재정보고서 작성에 필요한 회계기록의 제공에 대한 점검

마. 규칙 및 규정의 채택과 대한민국의 법령에 따른 센터의 재정·행정·인사 관리 절차에 관한 결정, 그리고

바. 지역 내 정부 간 기구 및 국제기구의 센터 업무 참여에 관한 결정

3. 이사회는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일반회기 회의를 개최한다. 이사회 의장이 자체 발의나 유네스코 사무총장 또는 이사회 구성원 단순 과반수의 요청에 따라 이사회를 소집하는 경우, 특별회기 회의를 개최한다.

4. 이사회는 자체적인 절차 규칙을 채택한다. 정부와 유네스코는 제1차 회의를 위하여 절차를 마련한다.

5. 센터의 장은 유네스코와 협의하여 정부가 임명하고, 센터의 장은 센터의 전반적인 운영과 관리를 감독한다.

제8조 유네스코의 기여

1. 유네스코는 유네스코의 전략 목표 및 목적에 따라, 필요한 경우 센터의 사업 활동을 위한 기술 지원의 형태로 다음과 같이 지원을 제공할 수 있다.

가. 센터의 특화 분야에 유네스코 전문가의 지원 제공

나. 적절한 경우 일시적인 직원 교류를 시행하고, 이 경우 해당 직원의 급여는 파견하는 기관이 지급, 그리고

다. 전략적 사업 우선 분야에서 공동 활동/프로젝트의 이행으로 정당성이 인정되는 경우, 예외적으로 사무총장의 결정에 따라 유네스코 직원을 일시적으로 파견

2. 위에서 열거된 모든 경우에, 그러한 지원은 유네스코의 '사업·예산'의 규정의 범위에서만 이행되며, 유네스코는 유네스코 직원의 활용과 관련 비용에 관한 설명을 회원국에 제공한다.

제9조 정부의 기여

1. 정부는 관련 법령과 대한민국의 연간 예산 배정에 따라 센터의 행정과 온전한 기능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재정적 또는 현물 형태의 모든 자원을 제공한다.

2. 정부 차원의 지원은 대한민국 정부와 제주특별자치도의 두 단계로 이루어진다.

3. 정부는 적절한 관련 법령과 대한민국의 연간 예산 배정에 따라 다음을 약속한다.

가. 센터를 위하여 필요한 재정·행정·기술 지원을 센터가 이용 가능하도록 제공

나. 제주특별자치도를 통하여 센터의 구역 및 장비의 제공·유지를 전적으로 부담, 그리고

다. 대한민국 환경부의 지원으로, 다음의 임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행정직원을 센터에 제공

1) 이사회 회의의 개최

2) 연간 업무계획 및 예산에 따른 센터의 활동 수행

3) 이사회의 채택을 위하여 업무계획 및 예산 제안

제10조 참여

1. 센터는 센터의 목적에 대한 공통의 이해를 가지고 센터와 협력하기를 희망하는 유네스코 회원국 및 준회원의 참여를 장려한다.

2. 이 협정에서 규정된 바에 따라 센터의 활동에 참여하기를 원하는 유네스코 회원국과 준회원은 이러한 의사를 센터에 통보한다. 센터의 장은 이 협정의 당사자와 그 밖의 회원국에 그러한 통보의 접수를 알린다.

제11조 책임

센터는 유네스코와 법적으로 별개이므로, 유네스코는 센터의 작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법적 책임이 없고, 어떤 법적 절차의 대상도 되지 않으며, 이 협정에서 명시적으로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정적 또는 그 밖의 어떠한 종류의 책임도 부담하지 않는다.

제12조 평가

1. 유네스코는 다음을 확인하기 위하여 언제든지 센터의 활동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가. 유네스코의 2대 글로벌 우선순위를 포함한 4개년 C/5 문서('사업·예산')와 관련 분야별·사업별 우선순위 및 주제에 맞춰진 유네스코의 전략적 사업 목표와 기대 결과에 센터가 중요한 기여를 하는지 여부

나. 센터가 실제로 추진하는 활동이 이 협정에서 제시된 활동과 일치하는지 여부

2. 유네스코는 이 협정을 검토할 목적으로 유네스코의 전략적 사업 목표에 대한 센터의 기여에 대하여 정부 또는 센터의 자금 지원으로 평가를 실시한다.

3. 유네스코는 실시된 평가에 대한 보고서를 가능한 한 조속히 정부에 제출한다.

4. 평가 결과에 따라, 각 당사자는 제16조 및 제17조에서 상정된 대로 이 협정의 내용에 대한 개정을 요청하거나 이 협정을 폐기할 수 있는 선택권을 가진다.

제13조 유네스코의 명칭 및 로고의 사용

1. 센터는 유네스코와의 제휴 관계를 언급할 수 있다. 따라서 센터는 그 명칭 뒤에 "유네스코 후원"이라는 문구를 사용할 수 있다.

2. 센터는 유네스코의 운영기구들이 정한 조건에 따라 센터의 서한 용지와 문서(전자문서와 웹사이트를 포함한다)에 유네스코 로고 또는 응용 로고를 사용하도록 허용된다.

제14조 발효

이 협정은 당사자의 서명 후 대한민국의 국내법과 유네스코의 내부 규정에서 협정의 발효를 위하여 요구하는 모든 절차가 완료되었음을 서면으로 상호 통보한 때에 발효한다. 최종 통보 접수일을 이 협정의 발효일로 본다.

제15조 기간

이 협정은 발효부터 6년의 기간 동안 유효하다. 협정은 유네스코 사무총장이 제공하는 갱신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집행이사회가 의견을 표명한 때에 당사자 간 상호 합의로 갱신된다.

제16조 폐기

1. 각 당사자는 외교경로를 통하여 다른 쪽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함으로써 이 협정을 일방적으로 폐기할 권리를 가진다.

2. 폐기는 당사자 중 하나가 다른 쪽 당사자에게 보낸 통보의 접수 후 90일째 되는 날에 발효한다.

제17조 개정

이 협정은 당사자의 서면 동의로 개정될 수 있다.

제18조 분쟁 해결

이 협정의 해석 또는 적용에 관한 당사자 간 분쟁은 우호적으로 해결한다.